

고용보험의 혜택

· 노무제공자 실업급여(구직급여)

1 실업급여(구직급여)

- 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

2 지급조건

-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
※ 단기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.
- ②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
- ③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
(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)

3 지급수준

-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~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$$\text{노무제공자 평균 보수} = \frac{\text{이직일 이전 12개월 신고된 보수 총액}}{\text{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 (고용보험 가입일수)}}$$

·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

1 출산전후급여

-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지급

2 지급조건

- ① 출산·유산·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인 경우
: 해당일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② 출산·유산·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
: 해당일 이전 18개월 중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③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
- ④ 출산·유산·사산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할 것

3 지급수준

- 출산·유산·사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(출산·유산·사산일 현재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경우엔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)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
- (상한액) 90일 630만원(매 30일 210만원), 120일 840만원
- (하한액) 90일 240만원(매 30일 80만원), 120일 320만원

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

·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

관할지역	서울, 강원, 경기(의정부, 동두천, 양주, 포천, 연천, 남양주, 구리, 가평)
주소	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(수송동, 연합뉴스빌딩) 11층
대표번호	1588-0075, 02-6946-0500
팩스번호	0505-290-3102, 0505-175-1203, 0505-175-1204

·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

관할지역	부산, 대구, 울산, 경남, 경북
주소	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(초량동, 아모레퍼시픽) 10층
대표번호	1588-0075, 051-790-0300
팩스번호	0505-132-1102, 0505-173-1103

·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

관할지역	인천, 경기(서울특고센터 관할 제외)
주소	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35(삼산동, 엘림타워) 501호
대표번호	1588-0075, 032-712-0500
팩스번호	0505-134-1102, 0505-175-1103

· 대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

관할지역	광주, 대전, 전남, 전북, 충남, 충북, 제주, 세종
주소	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(둔산동, KT&G) 7층
대표번호	1588-0075, 042-718-0600
팩스번호	0505-139-1102, 0505-250-1103

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www.comwel.or.kr)
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(국번없이 1350)

홍보간행물 2023-0042

2024.1.1.부터

☆ 일터에 안심! 생활에 안정! 고용산재보험!

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 적용됩니다



산재보험의 혜택

·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보상대상

-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적용

· 요양신청 방법

- 요양신청서상 소견서(진단서) 발급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
-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One-Click 산재상담 및 신청)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재해자의 동의를 받은 산재의료기관에서 대행하여 신청 가능

· 노무제공자 산재보험급여

요양급여	요양으로 발생하는 진료비, 간병료, 통원치료 등에 따른 교통비, 보조기 구입 비용 등 지급
휴업급여	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보수의 70%에 상당하는 급여 지급 -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: 41,150원('24.12.31.까지 적용) ※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
상병보상연금	요양을 시작한지 2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(1급~3급)에 따라 지급
장해급여	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(1급~14급)에 따라 지급
간병급여	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
직업재활급여	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비 등 지급
유족급여	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
장례비	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

· 노무제공자 평균보수

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 +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
재해발생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(일수)

- 평균보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
-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합산

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| 1588-0075

고용보험

방과후학교 강사(초·중등)

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(2021.7.1.부터 적용)

“노무제공자”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

- 방과후학교 강사(초·중등)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 (특기·적성프로그램, 교과프로그램, 초등돌봄교실 등)을 담당하는 강사

2 적용제외

- ① (연령제한)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
 -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
- ② (소득제한)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
 - 월 보수액 80만원 여부는 보험가입자(사업주) 단위로 판단
 - 단기노무제공자(노무제공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)는 월 보수액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
- ③ (외국인) 체류자격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은 당연적용, 그 외의 체류자격은 적용제외
 - 아래의 체류자격은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신청 가능

단기취업(C-4),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 예술흥행(E-6), 특정활동(E-7), 계절근로(E-8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재외동포(F-4), 방문취업(H-2)

3 보험가입자(사업주)

“노무제공자(방과후학교 강사)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”

- ① 학교가 외부강사와 직접 위탁계약 체결(개인위탁)
 - 국립학교: 정부 부처(교육부장관 등)
 - 공립학교: 시·도교육감
 - 사립학교: 학교법인
- ② 학교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강사 파견(업체위탁)
 - 위탁업체(법인 또는 개인사업주)

4 적용(신고)단위

- 보험가입자(사업주) 단위로 고용보험 적용(신고)함이 원칙
- 다만, 국·공립학교에 한해 학교 단위로 신고 가능
- ※ 사립학교 및 위탁업체는 반드시 보험가입자(사업주) 단위로 신고

5 보험가입자(사업주) 신고사항

- ① 보험관계 성립신고
 -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(최초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)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(최초 1회)

② 피보험자적신고

계약기간	신고사항	신고기한
1개월 이상 (일반)	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신고	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
1개월 미만 (단기)	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	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

※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(피보험자 1명당 3만원)

③ 월 보수액 신고

-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(매월)
- ※ 단기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갈음

월보수액 = (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- 비과세소득) - 필요경비¹⁾

- 1) 필요경비 = {(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)-비과세소득} X 직종별 공제율(16.5%)²⁾
- 2) 직종별 공제율(16.5%)은 '24.6.30.까지 적용(매년 고용노동부 고시)

6 고용보험료

① 보험료 산정

고용보험료 = 월 보수액 X 실업급여요율(1.6%)

② 보험료 부담

- 보험가입자(사업주)와 노무제공자(방과후 강사)가 각각 1/2씩 부담

③ 보험료 납부

- 보험가입자(사업주)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함께 납부기한(매월 10일)까지 납부
- ※ '24.1월 강사로 ▶ 월 보수액 신고(2.29.) ▶ 고지서 발송(3.20.) ▶ 납부기한(4.10.)

고용보험료 산정 예시 '24.1월분 방과후학교 강사의 사업소득이 500,000원인 경우

- 1) 필요경비 = 500,000원 × 16.5% = 82,500원 (기타소득, 비과세소득 0원 가정)
 - 2) 월 보수액 = 500,000원 - 82,500원 = 417,500원
 - 3) 고용보험료 = 3,340원 + 3,340원 = 6,680원
- (사업주 부담분) 417,500원 × 0.8% = 3,340원(원단위 절사)
- (종사자 부담분) 417,500원 × 0.8% = 3,340원(원단위 절사)

산재보험

방과후학교 강사(초·중등),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,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

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대상(2024.1.1.부터 적용)

“노무제공자”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

- ① 방과후학교 강사(초·중등)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 (특기·적성프로그램, 교과프로그램, 초등돌봄교실 등)을 담당하는 강사
- ②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
 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(특성화 프로그램)을 담당하는 강사
- ③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

2 적용제외

고용보험과 달리 연령, 소득, 국적 등에 따른 적용제외 조건 없음

3 보험가입자(사업주)

“노무제공자(방과후 강사)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”

- ① 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이 외부강사와 직접 위탁계약 체결(개인위탁)
 - 국립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: 정부 부처(교육부장관 등)
 - 공립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: 시·도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
 - 사립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: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
- ② 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강사 파견(업체위탁)
 - 위탁업체(법인 또는 개인사업주)

4 적용(신고)단위

- 보험가입자(사업주) 단위로 산재보험 적용(신고)함이 원칙
- 본점과 분리된 지점이 있는 사업장 또는 국·공립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은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노무제공자의 사업소득을 「소득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 가능

5 보험가입자(사업주) 신고사항

- ① 보험관계 성립신고
 -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(최초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)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(최초 1회)
- ② 월 보수액 신고
 -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(매월)
 - ※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(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)

월보수액 = (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- 비과세소득) - 필요경비¹⁾

- 1) 필요경비 = {(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)-비과세소득} X 직종별 공제율(16.5%)²⁾
- 2) 직종별 공제율(16.5%)은 '24.6.30.까지 적용(매년 고용노동부 고시)

6 산재보험료

① 보험료 산정

산재보험료 =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(0.7%)

- ※ 산재보험료율(0.7%) = 직종별 산재보험료율(0.6%) + 출퇴근재해요율(0.1%)
- ※ 산재보험료율은 '24.12.31.까지 적용(매년 고용노동부 고시)

② 보험료 부담

- 보험가입자(사업주)와 노무제공자(강사)가 각각 1/2씩 부담

③ 보험료 납부

- 보험가입자(사업주)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함께 납부기한(매월 10일)까지 납부
- ※ '24.1월 강사로 ▶ 월 보수액 신고(2.29.) ▶ 고지서 발송(3.20.) ▶ 납부기한(4.10.)

산재보험료 산정 예시 '24.1월분 방과후학교 강사의 사업소득이 500,000원인 경우

- 1) 필요경비 = 500,000원 × 16.5% = 82,500원 (기타소득, 비과세소득 0원 가정)
 - 2) 월 보수액 = 500,000원 - 82,500원 = 417,500원
 - 3) 산재보험료 = 1,460원 + 1,460원 = 2,920원
- (사업주 부담분) 417,500원 × 0.35% = 1,460원(원단위 절사)
- (종사자 부담분) 417,500원 × 0.35% = 1,460원(원단위 절사)

